

#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차 례

1. 머리말	1
2. 청소년보호법의 존재이유	2
3. 무엇이 ‘유해’한가	5
4. 정보사회의 포르노그래피 규제	10
5.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6
6. 맺음말	19

## 1. 머리말

⑬ 인터넷 성인정보 19세미만 입장불가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어느 포털사이트의 성인정보 홈페이지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마크와 문구이다. 이 페이지의 하위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상세한 신상명세를 입력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이러한 표식을 제시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등장은 말할 것도 없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주된 법적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이다.<sup>1</sup>

<sup>1</sup> 같이 명시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정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법 제41조).

1997년 제정되었고 두 차례의 주요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루 규제하는 참으로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인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등 가운데서 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그것도 온라인 매체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사회적 원인이 정보사회의 도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에 기인한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시기가 1997년이라는 사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가 1995년경부터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입법을 추진한 주된 동기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음란물 또는 저속물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의 미성년자보호법을 가지고는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표현물에 대하여 전혀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2</sup> 물론 온라인 매체물을 주로 다룬다 해도 그 이념적·현실적 논변은 오프라인 매체물을 비롯한 다른 규제대상에도 일정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대하여 필자는 정당성<sup>3</sup>과 현실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정당성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을 둘러싼 제반 담론들을 분석하고 그 규제가 정의의 이념과 법원리에 부합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둘째, 현실성 차원에서는 특히 정보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의 규제가 얼마나 집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려 한다. 물론 분석적으로 구분되는 정당성과 현실성이 실제로는 서로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 논의는 현실성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고 현실성 논의는 다시 정당성 논의를 요청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현재의 유해매체물 규제가 이념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필자는 이에 관한 윤곽이라도 그려보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왔던 청소년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을 패러다임 수준에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강조를 두려 한다. 이상의 논의를 위해서 우선 청소년보호법이 진정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청소년보호법의 성격 혹은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청소년보호법의 존재이유

청소년보호법의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은 유해매체물(‘음란’<sup>4</sup>한 문서 등)과 유해약

<sup>2</sup>1961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은 전체 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소략한 법률로서 청소년의 흡연·음주와 유기장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불량만화” 등 음란한 도서 및 비디오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인터넷상의 매체물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sup>3</sup>여기서 말하는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승인의 측면을 말하는 사회학적 정당성보다는 정의와 법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법철학적·법이념적 정당성을 주로 의미한다.

<sup>4</sup>청소년보호법상 ‘음란’ 개념은 형법상의 ‘음란’ 개념과는 그 범위가 다르다고 해석된다. 형법상 ‘음란’은 성인에게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음란’은 성인에게

물(술·담배 등), 유해물건(성인용품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업소(술집·여관·비디오방 등)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sup>5</sup>으로써 달성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직접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집단은 청소년이 아니라 주로 성인이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특정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면 제작업자나 유통업자는 당해 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고(법 제14조), 이를 ‘포장’하여야 하며(법 제15조), 일반매체물과 ‘구분·격리’하여 진열 또는 전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또한 이러한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에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의 시청관람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이를 어길 경우 벌칙규정에 의하여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 ‘구분·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있어 영리목적은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히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법 제50조 및 제51조).<sup>6</sup> 요컨대 처벌의 대상은 정보수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정보제공자이며,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성인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이 진정 의도하는 바는 성인을 처벌함으로써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저속한 표현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 처벌되거나 처벌의 위협을 받는 것은 성인이지만 이로 인하여 원하는 표현물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이다. 표면적으로는 성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청소년의 ‘볼 권리’, ‘들을 권리’, ‘읽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일차적 존재이유는 청소년을 통제하고 격리하고 억압하는 데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그 이름과 달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을 ‘배제’하는 법인 것이다.<sup>7</sup> “학생은 공부만 하면 돼!” 이 한마디로 대변되는 기성세대 대(對)청소년관이 청소년보호법에 고스란히 침윤되어 있다.<sup>8</sup>

는 허용되거나 청소년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음란’ 개념은 이렇게 의미의 폭이 대단히 넓은 불확정개념이어서 실제 적용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sup>5</sup>1999년 개정 때 신설된 항목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폭력·학대를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법 제2조 제7호), 학원폭력·가정폭력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고 다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 또는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숙취 빼기)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sup>6</sup>이는 인터넷 매체에 대하여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와는 달리 가상공간의 여러 사이트는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영리성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가상공간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표시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의 위협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sup>7</sup>“바로 이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대상화, 객체화되어 버린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욕과 감정과 감각은 그들의 위치에서 이해되고 또 규율 혹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인의 관점에서 그 성인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구조를 그대로 떠맡게 되는, 지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청소년 ‘보호’는 결코 보호일 수 없는 것이다.” 한상희/이경, “법과 일상생활의 문화비평적 재구성: ‘몸’담론 분석을 통한 생활정치의 복원,” 법과 사회 제21호(2001), 137쪽.

<sup>8</sup>이러한 해석이 비교적 강조되는 곳은 문화운동단체들에서이다. 예컨대 “문화개혁시민연대” <http://www.cncr.or.kr/>의 청소년보호법폐지 캠페인 및 “청소년문화발전본부” <http://www.cyberyouth.org/> 불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라인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담론은 주로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청소년보호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보다 4년이나 먼저 제정되었고 이미 제정 때부터 온라인매체 규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sup>9</sup> 학계와 시민사회의 공론은 후자의 법률안에서 제도화의 열개를 드러낸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해악을 둘러싸고 전개되었고, 특히 시민단체들의 슬로건은 ‘검열반대’로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미국에서도 부분위헌결정을 받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일명 CDA)으로부터 현재 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일명 COPA 혹은 CDA II)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법적 담론이 이루어졌으나, 주된 논점은 대략 “청소년을 유해한 표현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금지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현재의 기술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식이었다.<sup>11</sup>

필자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보다 논리적 우선성을 갖는 것이 표현에 대한 접근권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눈과 귀가 가려진 사회에서 입(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아무리 철저하게 보장되어도 넉넉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근대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기본권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소위 access권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성숙하지 못한 혹은 왜곡된 근대성의 표출이었다. 학식과 재산을 갖춘 성인남성의 자유만이 권리로써 보장받았을 뿐, 성적·인종적·연령적 소수자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바로 이러한 소수자 배제의 법리가 청소년보호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배려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만을 둘러싼 인터넷규제 찬반논란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청소년을 통제하는 법제도를 논하면서 청소년 문제는 정작 사라져버리고 성인의 권리만이 유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권리도 제한 가능한 권리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규제는 과연 허용되는 제한인가가 문제된다. 전술한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sup>9</sup>1996년 12월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청소년보호법안(대안)”에서는 인터넷 유해매체물 규제뿐만 아니라(법안 제7조 제4호), 이미 인터넷내용등급제도 예고하고 있었다(법안 제9조).

<sup>10</sup>“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및 “정보통신검열 반대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참고할 것.

<sup>11</sup>상세히는 황성기,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2002.6.8), <http://www.nocensor.org/> 103번 자료;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와 청소년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법률 제12호(2002), 6-24쪽; G. Ferrera 외 4인, *Cyberlaw: Text and Cases*(Cincinnati, Ohio: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1), 221-247쪽 볼 것. 이렇게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까닭에 장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유해물을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 CDA가 위헌에서 합헌의 지위로 승격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오는 것이다. Lawrence Lessig, 김정오 옮김,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나남, 2000), 399쪽 각주 41 볼 것.

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함양”이다. 따라서 논점은 동법의 청소년 ‘배제’정책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인격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 3. 무엇이 ‘유해’한가

청소년보호법이 특정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려는 이유는 그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데 있다. 법이 규정하는 유해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법 제10조 제1항).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대체로 ‘선정성·음란성’, ‘폭력성’, ‘반사회성·비윤리성’ 중 하나가 결정이유로 달려 있다. 이 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정성·음란성이며, 그 비율은 오프라인 매체보다 온라인 매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거의 전부가 선정성·음란성을 이유로 유해매체물 고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필자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물, 즉 ‘포르노그래피’<sup>13</sup>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술한 법 제10조의 기준은 다음 두 가지 관점을 혼합하고 있다. 첫째,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수용하게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포르노그래피로 인하여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전자가 도덕적 보수주의 담론으로 해석된다면, 후자는 자유주의 담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4 15</sup>

<sup>12</sup>예컨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2년 7월 고시한 유해매체물목록은 전부가 선정성을 이유로 달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2-27호.”

<sup>13</sup>포르노그래피는 “언어적으로든 그림으로든 그것을 보거나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기 위해 성적으로 묘사한 재현물, 또는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노골적이고 명백한 성행위가 묘사되고 통상적으로 성기가 드러나는 표현물”로 정의될 수 있다. 오정진,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규범적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9쪽. 포르노그래피는 하드코어와 소프트코어로 분류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목록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히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성적 은유를 통해서 묘사한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sup>14</sup>자유주의 담론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표현이 야기하는 ‘해악’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John Stewart Mill(이극찬 옮김), 자유론(삼성출판사, 1991) 불 것. 이런 관점에서는 ‘해악’이 입증되기만 하면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sup>15</sup>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제반 담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오정진, 위의 논문 불 것. 여기서는

첫째 관점은 사회의 도덕감정에 어긋나는 매체물은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성사회가 공통의 도덕에 의하여 통합되어 있다는 묵시적 전제가 깔려있다. 물론 전근대사회라면 이러한 가정이 타당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는 뒤르캤의 표현대로 공통의 집합의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통합된 사회였다.<sup>16</sup>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따라서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던 사회가 전근대사회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극도의 분화와 전문화에 의하여 공통의 신성을 상실한 곳이며, 베버의 말을 빌리면 ‘신들의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곳이다. 현대사회는 단일한 규범의식에 의하여 통합을 달성할 수 없는, 오히려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한 위에 소통을 추구하는 새로운 연대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렇게 가치와 규범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포르노그래피 자체의 청소년유해성을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하위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의 도덕성을 청소년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특정 성인집단의 도덕적 히스테리를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둘째, 포르노그래피가 성폭력 등 폭력행위를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르노그래피와 성폭력의 관계는 사회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제외한 하드코어포르노그래피까지도 허용하는 덴마크나, 포르노그래피가 자유롭게 팔리고 그 중 다수가 강간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미국보다 강간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sup>17</sup>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의 원인을 포르노그래피로 돌리는 담론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유는 기성체제의 문화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범죄자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상투적 변명으로 삼아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이를 ‘선정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하여 손쉬운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sup>18</sup>

인간의 행위는 자극-반응 모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 이 모델이 성립한다면 포르노그래피는 현실의 범죄행위로부터 소급되는 법적 인과관계의 고리에 의하여 완전히 포획되고 그 자체가 ‘현실폭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우리 상식체계와 법체계가 인정하지 않는 바이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적 주체성’에 의하여 현실

음란물 규제 담론, 표현의 자유 담론, 청소년 보호 담론, 반포르노 페미니즘 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청소년 보호 담론이 독자적인 포르노그래피 규제 근거로 성립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청소년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또다시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sup>16</sup>Emile Durkheim(임희섭 옮김), *자살론/사회분업론*(삼성출판사, 1977), 349쪽 아래 볼 것.

<sup>17</sup>또한 키제이연구소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1300명의 성범죄수감자와 900명의 다른 범죄자, 그리고 500명의 비범죄자간에 포르노그래피의 노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범죄자들은 포르노그래피에 반응을 덜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정진, 위의 논문, 111-112쪽; 김성천, “인터넷과 청소년보호,” *인터넷법률* 제12호(2002), 25-43쪽 볼 것.

<sup>18</sup>얼마 전 영화 ‘친구’에 심취한 한 고교생이 학급동료를 수업 중 칼로 찔러 살해한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영화가 살인을 야기했다는 식의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예컨대 조선일보, “영화 ‘친구’ 보고 수업중인 친구 살해,” 2001.10.13자). 하지만 이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면 학급동료 살해의 동기는 영화가 아니라 학교폭력이었으며, 영화는 단지 살해방법을 모방하는 한 계기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사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버리고 현상을 독해하면 포르노그래피 등 재현물이 바로 폭력을 야기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게 된다.

적 범죄행위와 포르노그래피 사이에서 법적 인과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권위를 가진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sup>19</sup>가 아니며,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재현’(representation: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sup>20</sup> 해석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면 포르노그래피와 현실 그 자체, 포르노그래피의 재현적 폭력과 실제세계의 현실폭력을 혼동할 수 없는 것이다.<sup>21</sup>

이러한 사정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남녀 중고등학생 16명에 대한 면접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성적 자극을 받기는 하지만, 성폭력으로 나아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성폭력이 아니라 단지 성적 경험이 있는 어느 한 사례도 포르노그래피의 영향과 함께, 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청소년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해석되고 있다.<sup>22</sup> 심지어 어떤 학생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한다.

(똑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들어?) TV매체들에서 그러잖아요.

포르노는 실체가 아니라 영화의 한 장르일 뿐이라고.<sup>23</sup>

이렇듯 비록 어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지만 포르노그래피의 재현적 세계와 현실의 실제세계를 잘 구분하고 있으며,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석의 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포르노그래피가 청소년 폭력행위의 직접적 원인이고 따라서 유해하다는 담론은 설득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성에 관한 제3의 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석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일정한 ‘해석틀’을 통해서만 사물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 해석틀은 근대초기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고정되고 일관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 담론 안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을 이렇게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성”(fluid and free subjectivity)으로 파악하고<sup>24</sup> 그 주체성이 담론공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면, 우리는 포르노그래피가 개인의 해석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적 투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담론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에 기성체제의 왜곡된 담론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sup>19</sup> 발화수반행위란 예컨대 “이 배를 엘리자베스호로 명명하노라”라는 언표에서처럼, 발화에 따르는 진술·명령·질문·약속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배심원의 유죄평결도 대표적인 발화수반행위에 해당한다. John Austin(장석진 옮김), *회행론*(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불 것.

<sup>20</sup> 오정진, 위의 논문, 183쪽 불 것.

<sup>21</sup>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는 재현과 현실의 구분을 간명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정우, “역설과 무의미: 마그리트론,” *한겨레* 21 제409호, 2002.5.23자.

<sup>22</sup> 심영희/김혜선,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9), 79-88쪽. 특히 85쪽 불 것.

<sup>23</sup> 위의 논문, 80-81쪽.

<sup>24</sup> 오정진, 위의 논문, 204쪽 불 것.

때 “건전한 인격의 함양”이라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제3의 담론인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이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맥किन, 드워킨 등 일단의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비하하며 성적 종속을 성애화하는 포르노그라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바로 ‘현실’ 그 자체가 된다. 강제와 폭력을 자발적인 섹스와 에로틱한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며, 대개 남성의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여성이 봉사하고 학대당하는 내용의 것들인 포르노그라피는 현실을 왜곡하고 여성차별의 관행을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포르노그라피는 직접·간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초래하고, 집단적으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함으로써 직장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나 성희롱(성적 괴롭힘)을 야기하게 된다고 한다.<sup>25 26</sup>

이러한 급진 페미니즘 담론 중에서 재현과 현실의 구분을 폐지하고 포르노그라피를 적나라한 현실폭력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앞서 두 번째 담론에 대한 논박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비판받아야 한다.<sup>27</sup> 하지만 대부분의 포르노그라피가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며 여성학대를 미화한다는 사실을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담론의 의의는 충분하다. 포르노그라피는 유동적 주체성을 가진 인간—특히 그것이 더욱 유동적인 청소년—의 ‘해석틀’에 영향을 주어 기성체제의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사회구조·문화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포르노그라피의 ‘유해성’은

<sup>25</sup>Catharine McKinnon(신은철 옮김), *포르노에 도전한다*(개마고원, 1997); Andrea Dworkin(유혜련 옮김), *포르노그라피*(동문선, 1996); 심영희/김혜선, 위의 논문, 23-25쪽; 오정진, 위의 논문, 145쪽 아래. 이러한 관점에서 맥किन과 드워킨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반포르노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1. 여성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성적 대상이나 상품으로 묘사된 경우
2. 여성이 수치나 고통을 즐기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3.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4. 여성이 묶이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 성행위의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5. 여성이 종속되거나 노예의 모습으로 성적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6. 여성의 신체가 부분화되어 그 부분으로 여성이 축소된 경우
7. 여성이 본래 창녀인 것처럼 묘사된 경우
8. 여성의 성기가 사물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되는 것을 묘사한 경우

남녀평등 침해로 간주하여 포르노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더 큰 해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성평등의 이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았다. 오정진 위의 논문, 167-171쪽 볼 것.

<sup>26</sup>사실 이러한 유형의 담론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하여 추상적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시행령 제7조).

<sup>27</sup>또한 급진 페미니스트 담론의 중심적 모티프는 표현물의 노출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야기하는 여성비하적 메시지에 있는데, 이는 표현물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에두아르 마네의 1863년 작품 “풀밭 위의 식사”는 성장을 한 부르주아 남성들과 전라의 여성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특히 한 여성은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성을 창녀로서 그리고 있고 또한 여성을 그림 속의 남성과 관객인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 혹은 객체로서만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음습한 그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은 금지되어야 할 것인가? 급진 페미니스트 담론의 핵심에 충실하자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추상적인 성도덕을 침해해서도 아니요, 현실적 폭력을 야기해서도 아니다. 아직 뚜렷하게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사물을 바라보는 눈, 그들의 ‘해석틀’을 우리 헌법가치가 희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에 그 유해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성은 청소년에게 ‘현실폭력’이 아니라 ‘해석폭력’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의 해석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려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법이념적 문제를 야기한다. 형사처벌은 현실폭력 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이고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다. 기껏해야 해석폭력에 지나지 않는 대상을 가장 강력한 현실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정의’는 본디 소박한 것이다. 그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표현되는 형식적 정의의 원리를 알맹이로 삼는다.<sup>28</sup>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동해보복원리의 모습으로 원시사회에서 소박하게 구현되었던 형식적 정의의 원리는 공동체 붕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고의 법이념이었다. 현대사회는 사적인 폭력을 범죄시하고 물리적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법체계를 형성하였기에 원시사회와는 달리 개인적 복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사적 폭력을 대체하는 국가의 공적 폭력에도 여전히 동해보복원리 혹은 그 보편적 표현인 형식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폭력으로서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sup>29</sup> ‘해석폭력’에 대해서 ‘해석폭력’으로 대응하고, ‘현실폭력’에 대해서 ‘현실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념의 하나이다. 포르노그래피의 ‘해석폭력’에 대하여 ‘현실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노정하는 절대주의 시대의 과시적 신체형과 다를 바 없다.<sup>30</sup> 청소년보호법을 읽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담고있는 표현물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보복하던 국가보안법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경우가 아닐 것이다. 사상과 감정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으로 반응하는 법질서는 정의로운 법질서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청소년보호법이 행사하는 또 다른 현실폭력은 ‘검열’의 일종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엄격한 법학적 의미의 검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만을 의미하였다.<sup>31</sup> 하지만 ‘사전(事前)’의 의미를 표현권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표현접근권의 관점도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단지 이미 출판·발행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검열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독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의 자유’로 포섭되어야 하며, 대화에는 청자, 독자

<sup>28</sup> 무엇보다 심현섭, “정의에 관한 연구: 其一, 정의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제2호(1988); 강경선/정태욱, 법철학(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불 것.

<sup>29</sup> 이에 대해서 상세히는 김도현, “법의 폭력성: 법과 폭력의 관계에 관한 고찰,” 현상과 인식 제22권 3·4호(1998) 불 것.

<sup>30</sup> 이것이야말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음란성’이다. 과시적 신체형에 대해서는 Michel Foucault(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나남출판, 1995) 불 것.

<sup>31</sup>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헌재 1996.10.4 선고, 93헌가13 결정.

혹은 관객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미 출판 또는 발행되었다고도 정당한 중국적 사법판단에 의하여 몰수된 경우가 아님에도 아무도 당해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는 공허한 독백의 자유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청자, 독자, 관객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규제는 모두 검열로 간주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법인 것이다.<sup>32</sup>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은 기존 법학의 협의의 검열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전적 표현규제가 대단히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접근권에 대한 사전적 규제도 현실공간보다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정보사회가 가져오는 기술적 특성과 그 법적 함의가 청소년보호법의 현실적 집행력에 어떤 제약을 가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4. 정보사회의 포르노그래피 규제

“한국 인터넷을 키운 8할은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그래피는 인터넷의 성장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sup>33</sup> 현재 우리가 수신하는 이메일의 80-90%는 광고성 스팸메일이며 그 중에서 절반이상이 성인물을 사거나 보라고 강권하는 것들이다. 또한 인터넷 서핑 중에 어렵지 않게 성인방송, 성인게임, 성인소설, 성인채팅방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어떤 기술적 제한도 가하지 않는 관행을 가지고 있던 유즈넷은 포르노그래피 영상물과 소설의 보고이기도 하였다.<sup>34</sup> 도대체 정보사회의 어떠한 특성이 이러한 포르노그래피의 폭발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사실 정보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술발달과 포르노그래피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해왔다. 인쇄술, 사진술, 비디오기술이 모두 포르노그래피의 확산을 촉진했고 또한 포르노그래피는 이들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sup>35</sup> 하지만 인터넷 이전의(혹은 바깥의) 현실사회 매체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 매체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특징적 차이점들이 있다. 이 차이점들로 인하여 현실사회의 기존 매체들은 정보사회의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하기가 용이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은 민족국가의 국경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실사회의 대부분의 행위는 단일한 민족국가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며,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국제공항과 국제항구 등 몇몇 관문만 엄격히 통제하면 불법적으로 국

<sup>32</sup>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개 ‘검열반대’를 표어로 내세우고 있는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전규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법학적 의미에서는 검열일 수 없다. 하지만 본문과 같이 검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sup>33</sup> 홍성욱, *네트워크 혁명, 그 열림과 닫힘*(들녘, 2002), 162쪽.

<sup>34</sup>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사정이 아닌 듯 하다. 과거 포르노그래피 영상물의 보고였던 `alt.binaries.pictures`로 시작하는 뉴스그룹들은 필자가 최근 접속을 시도해 본 결과 거의 전부가 막혀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그 하위그룹 중 포르노그래피와는 전혀 무관한 그룹들도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국내 뉴스서버 관리자에 있는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han.binaries.photo` 그룹에는 최근에도 포르노그래피 영상물이 게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sup>35</sup> 홍성욱, 위의 책, 160-161쪽 볼 것.

내에 반입되는 물건을 대체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전세계를 망라하는 네트워크로서, 국내사이트와 해외사이트 사이에 차별성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보다 빠르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사용자는 해외서버에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서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국내서버에 개설하는 것만큼이나 용이하다. 그렇지만 해외 포르노사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내법에 저촉되어 폐쇄당한 사이트가 해외서버로 옮겨 개설되면 이를 다시 폐쇄할 방법이 없다. 해외서버 관리자가 로그(log)기록을 우리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속성이다. 기존 매체의 경우 정보제작·배포자와 정보수용자의 구분이 비교적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배포자의 수가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 등 한 줌의 배포자만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면 한 사회의 포르노그래피 유통을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기술은 정보제작·배포자와 정보수용자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누구나 가정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외부적 지원이나 간섭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이를 전세계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정보기술은 저장매체의 가격을 거의 제로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를 무한히 복제 가능하게 만들었다. 통제할 대상의 숫자가 무한대이고 전파도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용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속성은 인터넷의 익명성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숨기기로 대단히 어렵다. 현실세계의 성인유흥업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인인지 여부는 외모에서부터 저절로 증명되지만,<sup>36</sup> 네트워크 상에서는 라인 저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sup>37</sup> 그래서 초기 인터넷에서는 성인만 접근할 것이 요망되는 사이트라 할지라도 사이트 입구에 경고문구를 넣어 두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동시에 이러한 익명성은 포르노그래피에의 접근을 훨씬 더 사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만들었다.<sup>38</sup>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셜, 이미지, 동영상, 채팅 등 수많은 포르노그래피물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사회의 기술적·매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의 포르노그래피 규제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포르노그래피 규제는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달성될 수 있다. 즉, 규제대상과 규제방법이 문제된다. 우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

<sup>36</sup>Lawrence Lessig, 위의 책, 87쪽 볼 것.

<sup>37</sup>New Yorker지에 처음 실렸고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158쪽에 재수록된 “인터넷에서는 네가 개인지 아무도 몰라!”라는 카툰은 이를 희화화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

<sup>38</sup>홍성욱, 위의 책, 162쪽 볼 것.

부터 살펴보자.

인터넷의 초국가적 성격과 정부관할권의 국지성을 극복하는 기술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국가방화벽’(national firewall)을 설치하는 것이다. 외국과 연결되는 광케이블이 국내에 진입하는 지점에 방화벽<sup>39</sup>을 설치하고 이것을 해외유해사이트목록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서버와 연동시켜 특정 해외 사이트와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국내망 전체를 일종의 거대한 인트라넷으로 만드는 것이다.<sup>40</sup> 그러나 이런 방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 설치된 ‘프락시서버’(proxy server)를 통하여 금지된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다.<sup>41</sup>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규범적인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의 구분이 없어져 통제대상이 무한히 많아진다는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토콜인 웹(web)은 ‘거미줄’을 은유하고 있지만, 사실 인터넷망은 완벽한 거미줄 형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반드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ISP의 숫자는 현실세계의 방송사나 신문사 숫자 정도로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 ISP들로 하여금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권고’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ISP들은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로 요청에 따르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업적 ISP들은 이러한 일괄차단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sup>42</sup> 기업이나 군대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음이 확실하다.<sup>43</sup> 그러나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sup>44</sup> 국가방화벽과 유사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또한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즉, 프락시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

<sup>39</sup>방화벽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 일련의 연관된 프로그램들로서, 다른 네트워크의 사용자들로부터 사설 네트워크의 자원들을 보호해준다. 방화벽은 외부인이 자신의 공개되지 않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자기회사의 직원들이 접속해야 할 외부의 자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인트라넷과 인터넷 사이에 설치된다. <http://www.terms.co.kr/firewall.htm>

<sup>40</sup>인터넷이 초래하는 정치적 문제에 민감한 중국이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Lin Neumann, “The Great Firewall,” [http://www.cpj.org/Briefings/2001/China\\_jan01/China\\_jan01.html](http://www.cpj.org/Briefings/2001/China_jan01/China_jan01.html) 볼 것.

<sup>41</sup>여기서 프락시서버는 방화벽 바깥에 존재하면서 릴레이 기능을 담당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사용자가 프락시서버에 접속해서 차단목록에 등재된 사이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이 서버가 당해 사이트의 내용을 캐시한 후 사용자에게 전송해주는 것이다. 이로써 사이트차단 소프트웨어를 속일 수 있게 된다. 실제 중국에서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위의 글 볼 것.

<sup>42</sup>“인터넷 통행 자유를 보장하라,” [http://www.ddanzi.com/ddanziilbo/80/80ch\\_701.asp](http://www.ddanzi.com/ddanziilbo/80/80ch_701.asp) 볼 것.

<sup>43</sup>다수의 기업들은 피고용인들이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 없이 이러한 필터링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당신을 훑치는 ‘디지털 유령,’” 한겨레21 제402호, 2002.4.4자 및 관련 기사를 볼 것. 또한 ‘군발이’라는 아이디로 어느 게시판에 “괜찮은 프락시서버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면 군대에서도 이 방식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44</sup>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료로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로는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 ‘가디언’ 서비스가 있다. 소위 ‘가족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그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김성조, “기술적 접근 전략,” 청소년보호 정책토론 자료집, 청소년사이버문화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방안(청소년보호위원회, 2001.7.5) 볼 것.

인터넷의 익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밝히고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영화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예컨대 컴퓨터제조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지문인식시스템 혹은 홍채인식시스템을 장착하여 컴퓨터를 제조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때 전국민 지문데이터베이스 혹은 홍채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sup>45</sup>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도 없는데, 특히 누구나 17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더욱 용이할 것이다.<sup>46</sup>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유해사이트에 대한 성인의 접근은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은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게 된다.<sup>47</sup>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전국민의 온라인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빅브라더’ 체제를 낳게 된다. 프라이버시가 제로로 축소되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 헌법질서와 시민규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가장 바람직한 신원확인방법이라 말해지는 전자서명시스템<sup>48</sup>을 강제하는 것이다. 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성인임을 전자서명을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만 입장시키는 구조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법적 문서를 교환하는 데 적합한 것이지만, 포르노그래피사이트가 반드시 전자상거래사이트일 이유는 없으며 일반 사이트에 까지 이런 부담을 지운다면 몇몇 기업체만이 성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sup>49</sup> 또한 정보수용자의 측면에서도 단지 성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료의 전자서명키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밀키를 분실 혹

<sup>45</sup>최근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지하철을 탈 때나 쇼핑물을 거닐 때나 도처에 설치된 홍채인식시스템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는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에서는 예비살인자를 체포·구금하는 precrime시스템이 차라리 정의를 느끼지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홍채인식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몸을 ‘해킹’하는(자기 눈을 타인의 눈으로 대체하는 수술) 장면이 등장한다.

<sup>46</sup>특히 현재 몇몇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시켜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본문의 상상이 부분적으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sup>47</sup>물론 지문인식시스템을 속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므로 완벽하지는 않다. 예컨대 타인의 지문을 본떠서 가짜 젤라틴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Biometric 시스템의 허와 실,” <http://www.hackerslab.org/cgi-bin/main/main.cgi?v02881> 볼 것.

<sup>48</sup>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은 문서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신원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암호화체계이다. 이것은 또한 전달된 메시지나 문서의 원래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상대방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나의 ‘공개키’를 가지고 해독함으로써 당해 데이터가 진정한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된 것임을 확실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당해 공개키의 주인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제3의 ‘인증기관’이 공개키와 개인키를 발급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라고 부른다. <http://terms.co.kr/digitalsignature.htm> 및 Lawrence Lessig, 위의 책, 96-103쪽 볼 것.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의 기관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김성조, 위의 글, 74쪽.

<sup>49</sup>혹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포르노그래피 상업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일면 타당하기는 하나, 포르노그래피의 상업화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인터넷 규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포르노그래피사이트 규제를 위하여 부과되는 접근통제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개인 정보제공자는 사이트를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실, 그 결과 상업사이트로서는 국가의 힘을 빌어 무료의 경쟁사이트를 제거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사실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와 자본의 동반자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셈이다.

은 도용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위의 지문인식시스템과 유사하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점도 문제된다.

그래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근제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 명세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 구조도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완전하게 구성하면 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접근금지 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생성알고리즘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sup>50</sup> 또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의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기관의 보유정보수가 충분하지 않아 확인 불가능인 경우가 많고<sup>51</sup> 전자서명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정보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sup>52</sup> 인터넷의 익명성 문제의 극복을 위한 그 어떤 방법도 기본권 침해 문제와 역비례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 콘텐츠 선별 기준)를 이용하는 것이다.<sup>53</sup> 서버 홈페이지에 PICS 메타태그를 삽입하도록 강제하여 웹브라우저 설정에서 이러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sup>54</sup> PICS방식이 말단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기능에 그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말단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나 ISP 수준에서 필터링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5</sup> 이렇게 되면 사이트

<sup>50</sup> 이에 대해서는 토론 “주민등록번호생성기 과연 유효인가,” <http://geekforum.kldp.org/stories.php?story=01/11/23/2676372> 볼 것.

<sup>51</sup> 신용정보기관은 주로 은행 예금구좌를 개설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신원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20대 초반 연령의 정보는 극히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김성조, 위의 글, 74쪽 볼 것. 또한 구좌개설을 위해 은행에 제공한 정보가 성인사이트 접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이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할지도 의문이다.

<sup>52</sup> 위의 글 볼 것. 나아가 가장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게 하는 구조라 할지라도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의 다수의 정보가 들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꺼리는 정보수용자가 많이 있을 것이므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sup>53</sup> PICS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등급을 매기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W3C에 의해 추천되었다. 웹 개발자들이 자기 사이트의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HTML 태그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로 성인용 콘텐츠로부터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다. 웹브라우저와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PICS 태그를 읽고, 미리 설정해 놓은 내용등급 설정치에 맞추어 그 사이트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ttp://www.w3.org/PICS/> 볼 것.

<sup>54</sup> 다음은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어느 웹사이트 소스에서 발췌한 것이다.

```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www.safenet.ne.kr/rating.html" 1 gen true for "http://www.mysite.co.kr" r (n 3 s 3 v 3 l 3 i 0 h 0))'>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icec.or.kr/rating.html" 1 gen true for "http://www.mysite.co.kr" r (y 1))'>
```

여기서 (n 3 s 3 v 3 l 3 i 0 h 0)는 노출 3등급(전신노출), 섹스 3등급(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폭력 3등급(살해), 언어 3등급(심한 비속어), 마약·무기사용·도박조장 없음, 음주·흡연 조장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기초한 PICS 태그이다. 상세한 기준은 [http://www.safenet.ne.kr/introduction/rating\\_standard\\_detail.html](http://www.safenet.ne.kr/introduction/rating_standard_detail.html) 볼 것. 아래의 (y 1)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한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표시의무의 일환이다.

<sup>55</sup> Lawrence Lessig, 위의 책, 400-411쪽 볼 것.

목록 차단방식과는 달리 프락시서버를 이용한 우회가 곤란해지지만, 동의 없는 차단이라는 점과 성인과 청소년을 불문하는 무차별 차단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부모가 브라우저 설정을 통하여 걸러내는 방식이라면 회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간단하게는 PICS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이다.<sup>56</sup> 모든 브라우저 저작자로 하여금 PICS 표준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여러 오픈소스 브라우저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브라우저 소스를 내려받아 약간만 수정하여 컴파일하면 PICS를 비켜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염려되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허가받은 사람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우리 법체계와 시민의식이 허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청소년의 정보접근권 문제를 논외로 하고 또 PICS가 악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법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적은 방식은 부모 동의 하에 PICS방식에 기초한 ISP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 방식은 차단의 범위가 대단히 협소하다. 나아가 진정한 난관은 도대체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 것인가라는 규제대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무엇을’의 문제는 사이트 차단방식과 PICS방식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해결불가능이다. 물론 playboy 사이트처럼 유명한 몇몇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에도 수 만 개의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사라지는 공간인 인터넷에서 ‘개미군단’의 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기계에 의존하는 ‘자동분류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말하지 말자. 자동분류시스템은 텍스트 몇 개와 이미지의 윤곽을 잡아내어 유해사이트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판단력’이 없는 기계는 이를 결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다.<sup>57</sup> 더욱이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컴퓨터를 켜면 메신저 프로그램부터 실행시킨다. 어른들이 잘 모르는 ‘야한’ 사이트 주소가 채팅 등을 통해 금세 전파된다. 또한 웹만이 인터넷이 아니다. 각종 P2P<sup>58</sup> 프로그램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전술한 인터넷에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의 구분이 철폐되는 현상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인터넷은 포르노그래피 규제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속성을 가진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이념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로부터 포르노그래피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한 ‘감시사회’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가상공간에서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듣고 또 읽을

<sup>56</sup> 서버가 브라우저를 체크하여 특정 브라우저의 접속만 허용하더라도 브라우저 이름과 버전을 속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sup>57</sup> 진현규, “‘인터넷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http://freeonline.or.kr/examin3.html> 볼 것.

<sup>58</sup> P2P(peer-to-peer)는 각 컴퓨터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컴퓨터에서라도 통신 세션을 시작할 수 있는 통신 모델을 지칭한다. 그 뜻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대등한 동료의 입장에서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비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있다. <http://www.terms.co.kr/peer-to-peer.htm> 볼 것.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으로는 Gnutella, eDonkey 등이 있다.

것이다.

## 5.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오랜만에 신문을 읽어보니 중학생의 흡연률이 3배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담배에 대한 매력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슈퍼마켓에 가서 담배를 샀다. 지난주엔 술 약속을 두 개 잡았다. 노래방과 커피숍과 게임방에 가서 담배를 피웠다. 목이 마르면 맥주를 사다 먹는다. 저번 달에 주민등록증을 하라고 편지가 왔다. 나는 이제야 17살이다...

하루라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길을 가다가 미성년자 청취불가 음악이 흘러나오면 귀를 막고, 케이블방송에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 역시나 나는 명목뿐인 보호가 아닌, 허울좋은 통제가 아닌, 진정한 보호가 받고 싶다.<sup>59</sup>

이것이 현실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이고 또한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물며 현실공간에 비해 구조적 규제가 적은 가상공간에서 청소년들을 포르노그라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물 정책이 집행능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스럽다. 청소년의 유해간행물 접촉실태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음란·폭력성 간행물을 접촉하지 않은 경우는 표본집단 2730명 가운데 201명으로 7.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 이상이 유해간행물을 접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음란·폭력성 간행물의 접촉경로는 만화, 잡지, 사진 등 종류를 불문하고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60</sup> 더욱이 청소년의 포르노그라피 접촉은 이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면접남학생 대부분이 초등학교

<sup>59</sup> 청소년사이버의회 의제 나를 보호한다고?—청소년보호법에 대한서의 발제문 중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가?” [http://www.cyber youth.org/assembly/subject/subj7\\_1.htm](http://www.cyber youth.org/assembly/subject/subj7_1.htm)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다음 인용은 어느 청소년의 “빨간마후라” 사건에 대한 감상이다. 조은, 091012: “공부 열심히” 라구?(또하나의문화, 1998), 169쪽.

어른들은 빨간마후라 사건에 기겁을 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괜찮은 불거리(?)가 생긴 수준이랄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남자애들끼리 이런저런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십대들의 성에 대해 아무런 주저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간마후라는 그다지 신선한 것이지 않았다.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엄마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세대 차를 느꼈다. 그만큼 엄마와 내가 ‘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안한 결과겠지만. 세상에! 나보고 봤냐고 물으려 했더니 어른들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고 싶을까? 봤으면 어떻게 안 봤으면 어때? 그런 것에 대한 결정권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닐까? 어른들은 우리의 특수하거나 불건전한 면에만 관심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평소에는 대화를 나눌 줄 모른다. 술, 담배, 성 그런 것들 말고 좀 우리가 어떤 것에 즐거워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달라는 것이다. 술, 담배, 성 그런 것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 줄 안다. ‘그런 것’만 몰라주면 그저 잘 자라고 있는 줄 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젯거리가 아니다!!

<sup>60</sup> 오치선 외 5인, “청소년유해간행물(만화·잡지 등)의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청소년보호위원회, 2001.6), i-ii쪽 불 것.

시기에 음란물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란물 접촉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음란물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제 음란물은 여학생들의 또래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sup>61</sup>

(어른들이 포르노 보지 마라 그러면 넌 어떤 생각이 드니?) 그냥 웃고 넘겨요. (포르노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규제될 것 같니?)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 구할 수 있어요. 빨간마후라도 지금 그거 됐잖아요. 통신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친구가 그 디스켓 가지고 있거든요.<sup>62</sup>

어느 여고생의 말이다. 이렇듯 청소년보호법의 배제와 격리 정책은 현실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수단의 효율성이라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없는 법정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다. 더욱이 포르노그래피의 ‘해석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접근봉쇄라는 ‘현실폭력’으로 대응하는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일종의 ‘과잉진압’이자 ‘검열’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법이념과 법원리 차원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그만두고 그저 방임해야 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정책은 현재의 격리정책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다.<sup>63</sup> 적어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곳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위헌적인 상황은 사라질 것이며, 나아가 과잉진압과 검열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포르노그래피는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이며 여성을 객체화·대상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틀’에 위해를 가하고 있고 또한 기성체제의 가부장적 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해석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정책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헌법가치에 어긋나는 사회구조를 영구히 지속시킬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동은 포르노그래피로부터 청소년을 배제·격리시키는 “명목뿐인 보호”, “허울좋은 통제”일 수 없다. ‘해석폭력’에 대하여 즉자적·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다. ‘해석폭력’에 대해서는 ‘해석폭력’으로 대항해야 한다. 포르노그래피가 청소년의 ‘해석틀’을 왜곡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포르노그래피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고 듣고 읽으면서 토론하고 대화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배제와 격리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토론과

<sup>61</sup>이원숙 외 4인,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8), 174-179쪽 볼 것.

<sup>62</sup>심영희/김혜선, 위의 논문, 112쪽.

<sup>63</sup>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또하나의문화, 1997), 182-183쪽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내버려둘’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러한 거리두기는 간간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고 한다. 부모와 교사의 과잉보호와 간섭 속에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공감 가는 주장이다.

대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대화’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의 급격한 전환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의식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남녀 청소년 할 것 없이 음란물에 대해 의식적, 비판적 성찰이 없었다”고 한다.<sup>64</sup> 성의식 형성기인 청소년들은 포르노그래피 접촉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파편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섹스란 친밀성에 기초한 육체와 정신의 대화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단지 ‘배설’만을 위한 섹스를, 강압이 열락으로 그려지는 팔루스(phallus)적 섹스만을 보며 자라고 있다.<sup>65</sup>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성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호교사가 생식기관과 임신과정을 설명하고 순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맺는 ‘생물학적 성’(sex)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은 포르노그래피를 통하여 남녀간의 성관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성교육은 오히려 포르노그래피의 힘을 강화시키는 격이 된다.<sup>66</sup> 이제는 ‘사회학적 성’(gender)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개적인 성담론을 통하여 포르노그래피의 왜곡된 재현에 대해 비판하고 또한 기성사회의 왜곡된 성차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sup>67</sup> 이런 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진정한 보호”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교육에 가장 적합한 곳은 공교육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억압적인 교육체제 아래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를 보내줄지 의심스럽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사의 자질과 권위가 추락하고 있고 “공부는 학원에서, 수면은 학교에서”라는 인식이 팽배한 교실현장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성담론과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함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어도 현재의 ‘격리’정책보다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정부는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하며, 아이들에게 사회적 성을 가르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너희들은 공부만 하면 돼!”라는 ‘배제’의 패러다임을, 청소년은 어른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이해하려 하며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대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정책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하고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일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보호’ 정책은 청소년들의 냉소만 불러올 따름이다.

<sup>64</sup>이원숙 외, 위의 논문, 179쪽.

<sup>65</sup>Anthony Giddens(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새물결, 1996), 191-217쪽 참고할 것.

<sup>66</sup>심영희/김혜선, 위의 논문, 110쪽 볼 것.

<sup>67</sup>이원숙 외, 위의 논문, 181쪽; 심영희/김혜선, 위의 논문, 115쪽. 또한 “성중독증 현상은 의사소통 세계의 회복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Anthony Giddens, 위의 책; 조혜정, 위의 책, 248쪽 볼 것.

## 6. 맺음말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외국인 등 소수자를 ‘타자’로서 배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근대성이 한국적 봉건성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법현상이다. 길으로는 ‘건전한’ 척 하지만 뒤로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온갖 ‘음란함’이 넘쳐나는 문화적 이중성을 가진 곳이 우리 사회이다.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여 이러한 ‘음란함’을 카페트 밑으로 쓸어 넣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정신분열증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음란함’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성인들이 나약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나약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 불룩한 카페트를 한 손으로 슬쩍 들추어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포르노그라피의 ‘해석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해석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것 중에는 오히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열람시켜야 할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엑스존” 등의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음란성’을 이유로 유해사이트 지정을 받았지만, 성적 지향의 다양성과 이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인들과 같이 접속해서 읽고 토론해야 하는 사이트가 바로 이런 곳이다.<sup>68</sup> 또한 서울청년, 노동자연대 등의 책자가 ‘반사회성’을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이 체제수호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에서 진정 ‘유해’한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마저 청소년의 접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사치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의 ‘배제’ 정책이 오히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함양”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신념에서 본 논문이 쓰여지게 되었다. 다시 강조하자면, 포르노그라피의 ‘해석폭력’에 ‘현실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이므로, 오히려 ‘유해’한 포르노그라피를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보고 듣고 읽으면서 비판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수준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에 관한 부분은 폐지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청소년성보호법은 다른 차원에 속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른바 ‘원조교제’와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과는 달리 ‘현실폭력’에 대하여 ‘현실폭력’으로 대응하는 법이다. 원조교제는 청소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매매이므로 마치 폭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적 권력관계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성인과 청소년, 돈 가진 자와

<sup>68</sup> 현재 “엑스존”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반발하여 동성에 관한 내용을 폐쇄하고 ‘차별철폐·검열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http://www.exzone.com> 볼 것.

돈 없는 자, 사회적 지위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관계인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형식적 ‘합의’는 실제로는 합의가 아니라 강요일 따름이다. 이는 교수와 학생,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와 유사하다. 성희롱(성적 괴롭힘)은 바로 이러한 권력관계의 남용이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아동포르노그래피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아동의 진정한 동의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아동을 성행위에 종사시키고 그것을 영상화하여 배포하는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사회적·화폐적 폭력의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sup>69</sup> 이러한 아동포르노그래피는 범죄의 산물로서 마땅히 국가에 의해 몰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형사사법권력이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폭력에 대한 현실폭력’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만 후자의 폭력은 정당방위에서와 같이 ‘정당한 폭력’이 된다. 모든 것을 억압적 법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은 근대적 법치주의에 역기능을 수행한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압적 형사사법권력이 포르노그래피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단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만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뿐이다.

---

<sup>69</sup> 그러나 실제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의 만화적 재현물을 문제삼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김인규 교사를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실제 성행위가 아닌 상반신 노출 정도의 성행위연출장면을 문제삼아 영화 “춘향뎐”을 비난했던 강지원 전위원장은 무엇이 포르노그래피인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또래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제작한 “빨간마후라”는 아동포르노그래피로 분류하기 곤란할 것이다.